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83855 판결 [보증금 청구 소송]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838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단53373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서평종합건설

피고, 항소인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7. 6. 21.

판결 선고2017. 7. 1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단53373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128,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4. 11. 6. 미래개발과 사이에 공사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행보증계약상의 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래개발과 사이에 공사정산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미래개발이 위 합의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합의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1. 6. 미래개발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공사정산금액 : 1,283,198,715원

전회지급금액 : 1,119,610,000원

정산지급금액 : 163,588,715원 비교 : 선금공제 후 150,000,000원

누계지급금액 : 1,283,198,715원

1. 정산금액은 공동수급사의 대표사인 원고가 미래개발의 채권자에게 직접지급에 대하여 미래개발이 동의한다(첨부 1).
2. 정산지급금액은 미래개발의 요청금액에 대한 원고는 정산금액(163,588,715원)에서 미정산된 선급금을 공제하고 정산지급금액(150,000,000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채권금액의 확인, 채권금액의 조정에 따라서 지급금액은 차감할 수 있다(첨부 2).
3. 현장 내 반입 설치되어 있는 미래개발 소유의 자재는 미래개발 소유의 자재임을 확인하고 그 자재비는 정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에 소유권을 양도한다(첨부 3).
4. 미래개발의 채무와 관련한 채권자는 원고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한다(첨부 4).
5. 양사의 내용 합의시 미래개발은 원고에 공사포기각서를 우선 제출하며,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취하한다(첨부 5).
6. 위 합의는 첨부 1 내지 5를 원고가 인수, 확인 후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첨부 1: 직접지급동의서

첨부 2: 지급채권현황

첨부 3: 반입, 설치된 자재양도 합의서

첨부 4: 채권자 각서

첨부 5: 잔여공사 포기 각서

(2) 미래개발은 2014. 11. 13. 원고에게 '2014. 10. 14.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포기하고,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20., 2015. 1. 13., 2015. 1. 27. 미래개발에게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첨부 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3차에 걸쳐 통지하였다.

(4) 미래개발은 2015.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직접동의서, 지급채권현황, 채권자각서 등의 채권 처리를 위한 채권자와의 면담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로서도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6. 미래개발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첨부 1 내지 4를 인수, 확인 후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2015. 2. 5. 현재 32건의 채권자 각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5) 미래개발은 2015. 4. 28. 원고에게 '현장 채권자들과 합의가 86%에 이르렀고, 미합의건은 미래개발이 지급 예정이다. 2015. 4. 30.까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위 통지서에 합의서 총괄 내역 항목별 구분, 정산서, 개인 및 업체별 합의 이행각서, 각서, 인감증명서, 금융자료(송금표), 미지급 금액 분류표를 첨부하였다.

(6) 원고는 2015. 5. 4. 미래개발에게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첨부 서류를 제출받아야 이 사건 합의에 기한 15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니 위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다.

(7) 미래개발은 2015.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첨부 문서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통보하고, 직접지급동의서, 지급채권현황 등을 첨부하였다.

(8) 원고는 2015. 8. 20. 미래개발에게 앞서 제출한 첨부 문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5. 8. 31.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자 각서 및 이에 필요한 채권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9) 원고는 2015. 9. 3. 미래개발에게 '2015. 8. 20. 공문에서 2015. 8. 31.까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기간까지 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미래개발에게 도달하였다.

(10) 미래개발은 2015. 9. 8.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의한 사항을 마무리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위 회신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무비, 자재비, 경비 지급에 대한 미래개발의 직접지급동의서, 지급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래개발과 사이에 미래개발이 직접지급동의서, 지급채권현황, 반입, 설치된 자재양도 합의서, 채권자 각서, 잔여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교부, 확인 후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상의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미래건설이 원고에게 위 첨부 서류 중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미래개발에게 2015. 8. 31.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자 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미래건설이 위 기일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미래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미래건설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통지가 미래건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미래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래건설이 이 사건 합의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나 원고가 협조 및 확인을 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조윤정

판사하세용